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1978년 12월 22일
제 2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총회는,

현장에 제시된 유네스코의 목적은 "정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제 1조 1항)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언어와 표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고자"(제 1조 2항) 노력할 것임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현장에 따라,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충분하고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객관적 진리가 구속을 받지 않고 탐구되며, 또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됨을 확신하며, 그 국민간에 있어서의 전달의 방법을 발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호 이해와 상호의 생활을 진실하고도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전달의 방법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결의한다"(전문 6 문단)는 것을 *face="바탕">상기하며*,

유엔 현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을 *상기하고*,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특히 제 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를 *상기하고*;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동 규약의 제 19조는 동일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동 규약 제 20조는 전쟁의 선동과 국민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을 비난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 제 4조와 197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정책 범죄의 억제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고*,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인종차별의 선동이나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채택하기로 약속하고, 인종차별정책 범죄와 그와 유사한 차별주의 정책이나 강령의 조장을 막도록 동의하였음을 *상기하며*,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하여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채택한 선언 및 결정과 이 분야에서 유네스코에 요청되는 역할을 *상기하며*,

1966년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을 *상기하고*,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59(I)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시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이고 . . . 정보의 자유는 남용됨이 없이 그 특권의 사용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자하는 의향과 수용능력을 필수적인 요 소로 요구하며, 편견 없이 사실을 추구하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지식을 전파하려는 도덕적 의무를 기본원칙으로 요구한다 . . ."고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1947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10(II)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침해, 혹은 공격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고자 의도된, 혹은 그러하기 쉬운, 모든 형태의

선전을 비난하고 있음을 face="바탕">상기하고,

1947년 총회에서 역시 채택된 결의 127(II)는 회원국들이 헌법적 절차의 한계 내에서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를 해치기 쉬운 잘못됐거나 왜곡된 보고서의 보급을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매스 미디어와 평화, 신뢰 및 국가간 우호적 관계의 강화를 위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총회의 여타 결정들을 상기하며,

1968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9.12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제거를 돕기 위한 유네스코의 목적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976년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12.1은 어떠한 형태와 표현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라 도 유네스코의 근본목적에 배치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평화와 인간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 인종주의 인종 차별정책 및 국가간 증오를 위한 선전을 억제하기 위해,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정보매체의 공헌에 관한 결의 4.301을 상기하고,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매스 미디어가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공헌을 인식하며,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인종과 인종편견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현대 사회에서 정보문제가 복잡하고, 특히 유네스코 안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다양하며, 열망과 관점과 문화적 정체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모든 당사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의식하며,

새롭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세계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질서확립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열망을 의식하고,

1978년 11월 28일, 본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평화와 국제적 이해의 강화, 인권의 향상, 그리고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정책과 전쟁 선동의 억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확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매스 미디어는 선도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이 공헌은 취급되는 주제의 다양한 측면이 정보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제 2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되는 의견과 표현, 그리고 정보의 자유의 행사는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가용한 정보의 원천과 수단의 다양성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며, 그리하여 각 개인들이 사실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널리스트는 보도의 자유를 지녀야 하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최대한의 가능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스 미디어가 공중과 개인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공들인 제작에 공중의 참여가 촉진된다.
3. 평화와 국제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며 인종주의, 인종차별정책, 그리고 전쟁의 선동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의 매스 미디어는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특히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외국의 점령,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적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억압받는 자들과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인권을 향상하는 데 공헌하게 된다.

4. 매스 미디어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본 '선언'의 원칙을 촉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저널리스트와 매스 미디어 종사자들이 국내, 국외에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보증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3조

1. 매스 미디어는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선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2. 공격적 전쟁, 인종주의, 인종차별정책 및 특히 편견과 무지에 의해 양산된 여타의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데 있어, 매스 미디어는 모든 공중들의 목표, 열망, 문화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무지와 오해를 제거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도록 만들며,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빈곤, 영양실조, 질병등과 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큰 재앙에 관심을 모으는 데 공헌하며, 그로 인해 국가들이 국제적 긴장의 감소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기여한다.

제 4조

매스 미디어는 인권, 모든 인간과 국민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평화, 정의, 자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열망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 5조

의견,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보가 모든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이미 공표된 혹은 보급된 정보들이,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의 선동을 억제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에 심한 편견을 가지도록 하였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관점이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 6조

정보의 흐름에 있어, 새로운 균형과 보다 큰 호혜성의 확립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흘러나오거나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의 흐름 및 개발도상국간 정보 흐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매스 미디어는 강화되고 성장하며 개발도상국간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매스 미디어와도 협동할 수 있는 조건과 자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 7조

매스 미디어는, 유엔의 여러 다른 기구들이 채택한 결의들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목적과 원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함으로써,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및 인권의 향상,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제 8조

저널리스트 및 매스 미디어 종사자의 전문적 훈련에 참여하는 전문적 기구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능수행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구와 사람들은 그들의 윤리강령을 작성하고 그 적용을 보장할 때 본 '선언'의 원칙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 공동체는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보급을 위한 조건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저널리스트와 매스 미디어 종사자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호해 주는 조건의 창출에 공헌하여야 한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점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제 10조

1.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규정과 국제 문서 및 협약의 적용에 대한 당연한 존중과 함께, 정보의 보급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와 사람들이 본 선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전세계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보급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매스 미디어가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과 자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들 간의 협력과 그들과 선진국 매스 미디어 사이의 협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등성과 상호 혜택,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형성해 가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 사이에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의 교환, 특히 경제와 사회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정보교환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11조

본 선언이 충분히 발효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입법적 및 행정적 규정과 여타 의무사항에 대한 당연한 존중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의 규정과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포함된 해당 원칙에 따라 매스 미디어의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건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